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11
----------	-------

발의연월일 : 2026. 6. 17.

발 의 자 : 한정애 · 김 윤 · 정준호  
김남근 · 조계원 · 임미애  
허성무 · 이기현 · 박홍배  
조인철 · 최혁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동한 지 20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의 붕괴,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가동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3년 주기의 정기검사 외에 풍력발전 설비의 노후화와 관련된 별도의 안전검사나 철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임.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최근 실시한 풍력발전기 특별 안전점검 결과, 점검 대상 발전기 114기 중 26기가 중대한 결함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설계수명 20년을 초과한 풍력발전기는 향후 5년 동안 80기에서 208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풍력발전기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장기사용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밀안전진단)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52조제1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0조제1호의2에 따라 발전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2.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신 설>

2의2. (생 략)

3. ~ 10. (생 략)

② · ③ (생 략)

1의2. 제1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0조제1호의2에 따라 발전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